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준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247
----------	-------

발의연월일 : 2026. 3. 5.

발 의 자 : 정준호 · 복기왕 · 조인철
박희승 · 이견태 · 이연희
채현일 · 양부남 · 안태준
노종면 · 문진석 · 전용기
염태영 · 이용우 · 한준호
박균택 · 김태년 · 박용갑
김준혁 · 전진숙 · 강준현
백선희 · 최혁진 · 이주희
의원(2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고자동차 판매 시 자동차매매업자로 하여금 해당 자동차의 침수 사실 및 구조·장치 등의 성능·상태를 점검(이하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이라 함)한 내용을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 내용에 대해 보증하여야 하며, 그 보증에 책임을 지는 보험(이하 “책임보험”이라 함)에 가입하여야 함.

그러나 자동차매매업자가 책임보험의 보증 범위보다 넓은 공제조합의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는 유지되어 소비자에게 직·간접적으로 비용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동차매매업자가 책임보험의 보증 범위보다 넓은 공제조합의 공제에 가입한 경우, 기존에 부여하고 있던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험 가입 의무를 면제하여 보증 체계를 다각화하고, 소비자에 대한 불필요한 비용 전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58조의3제4항 등).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8조의4제2항에”를 “제58조의4제2항 본문에”로, “책임에”를 “책임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의 공제의 가입에”로 한다.

제58조의4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가 제1항에 따른 보증책임의 범위보다 넓은 제68조의14에 따른 공제조합의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조제5항제8호 중 “제58조의4제2항을”을 “제58조의4제2항 본문을”로, “경우”를 “경우(같은 항 단서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가 공제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법률 제21182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81조제25호의7 중 “제58조의4제2항을”을 “제58조의4제2항 본문을”로, “상태점검자”를 “상태점검자(같은 항 단서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가 공제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8조의3(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 ③ (생략)	제58조의3(자동차관리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이 완성된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증서(<u>제58조의4제2항에 따른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책임에 관한 관계증서를 포함한다.</u> 이하 이 조 및 제84조제4항제23호에서 같다)의 사본을 발급하거나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 ----- ----- ----- ----- -- <u>제58조의4제2항 본문에</u> ---- ----- <u>책임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매매업자의 공제</u> <u>가입에</u>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제58조의4(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책임) ① (생략)	제58조의4(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는 제1항에 따른 보증에 책임을 지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 ----- -----.
<u><단서 신설></u>	<u>다만, 자동차매매업자가 제1항</u>

③ (생략) 제66조(사업의 취소·정지) ① ~ ④ (생략)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 7. (생략) 8. <u>제5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u>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을 한 <u>경우</u> ⑥ (생략) 법률 제21182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u>에 따른 보증책임의 범위보다 넓은 제68조의14에 따른 공제 조합의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③ (현행과 같음) 제66조(사업의 취소·정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 ----- ----- ----- ----- ----- 1. ~ 7. (현행과 같음) 8. <u>제58조의4제2항 본문을</u>----- ----- ----- ----- <u>경우(같은 항 단서에 따라 자동차 매매업자가 공제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한다)</u> ⑥ (현행과 같음) 법률 제21182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
--	--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1조(벌칙) ----- ----- ----- -----.
1. ~ 25의6. (생략)	1. ~ 25의6. (현행과 같음)
25의7. <u>제5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성능·상태점검을 한 자동차성능·<u>상태점검</u>자</u>	25의7. <u>제58조의4제2항 본문을</u> ----- ----- ----- <u>상태점검</u> <u>자(같은 항 단서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자가 공제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한다)</u>
26. ~ 28. (생략)	26. ~ 28. (현행과 같음)